

창원지방법원 2024. 7. 15 선고 2024가단1715 판결 [건물명도 등]

전 문

원고(선정당사자)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4. 7. 15.

주 문

- 피고는 원고(선정당사자) 및 선정자에게,
가. 별지 2 기재 부동산 중 별지 3 도면 표시 5, 2, 3, 6,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28㎡를 인도하고,
나. 각 6,125,000원 및 2024. 4. 3.부터 위 가.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각 월 962,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- 원고(선정당사자)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-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 제1의 가.항 및 피고는 원고(선정당사자) 및 선정자에게 12,250,000원 및 2024. 4. 3.부터

주문 제1의 가.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,925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(무변론판결)

3. 일부 기각하는 부분

공동임대인의 차임채권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할채권이므로, 원고(선정당사자) 및 선정자는 각자 자신의 공유지분의 범위 내에서만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다. 따라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 청구 중 각 1/2 지분에 해당하는 청구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.

판사 확정언

별지